

의안번호	2217531
의 퇴 인	주진우 의원
회 답 일	2026. 5. 12.
추 계 번호	26B1610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한국수산진흥공사 자본금 5,000억원을 전액 출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000억원(연평균 1,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자본금(안 제5조)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000

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정부가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을 한국수산진흥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법인격)	한국수산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전액 정부가 출자함	의무규정
3	안 제11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함(제1항) 1.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선 신조 및 대체건조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 나. 공공어선의 신조, 소유 및 임대(청년 어업인 및 비의도적 휴업 어업인 대상) 다. 노후 어선 및 유휴 어선의 매입·관리 및 재활용 2. 수산업 관련 금융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가. 어업경영체의 민간금융 이용 시 채무보증 나. 어선 및 어구 현대화 자금의 투자 및 용자 3. 수산물 유통 및 자원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부수어획물 관리시스템 도입 및 유통 시장 개설·운영 나. 부수어획물 판매 수익금의 관리 및 어업인 복지 증진 사업 다.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적 관리 및 운영 지원 4.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감척어선의 공공활용 및 불법어구 수거 지원 나. 은퇴 어업인 대상 금융사업 및 어선 청년임대 연계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산업 진흥 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9.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안 제12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함(제1항)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충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의무규정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7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부칙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법인격)	○	• 제정안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안 제5조(자본금)														
3	안 제11조(업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한국수산업진흥공사가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한 업무 또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위탁 사업 및 비수익적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융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위탁업무의 범위, 비용 보조·융자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에 따라 한국수산업진흥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table><thead><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head><tbody><tr><td>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3145-301)</td><td>어선원의 안전확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자금의 90%를 어업인에게 융자 지원하고 이차차액을 국비로 이차보전 ※ 안 제11조제1항제1호가목</td><td>2,277</td></tr><tr><td>해양폐기물 정화사업-생분해어구보급 (1065-301)</td><td>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발생 저감을 위해 어업인에게 생분해어구 구입비용을 지원 ※ 안 제11조제1항제2호나목</td><td>2,673</td></tr><tr><td>감척어선 공공활용 (직접) (3145-308)</td><td>감척된 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 안 제11조제1항제4호가목</td><td>3,045</td></tr></tbody></table>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3145-301)	어선원의 안전확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자금의 90%를 어업인에게 융자 지원하고 이차차액을 국비로 이차보전 ※ 안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2,277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생분해어구보급 (1065-301)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발생 저감을 위해 어업인에게 생분해어구 구입비용을 지원 ※ 안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2,673	감척어선 공공활용 (직접) (3145-308)	감척된 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 안 제11조제1항제4호가목	3,045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3145-301)	어선원의 안전확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자금의 90%를 어업인에게 융자 지원하고 이차차액을 국비로 이차보전 ※ 안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2,277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생분해어구보급 (1065-301)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발생 저감을 위해 어업인에게 생분해어구 구입비용을 지원 ※ 안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2,673													
감척어선 공공활용 (직접) (3145-308)	감척된 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 안 제11조제1항제4호가목	3,045													
5	안 제17조(비용의 보조 등)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한국수산진흥공사가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보증이행준비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공사의 순이익금, 이월결손금, 손실금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6	안 부칙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한국수산진흥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설립준비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한국수산진흥공사 자본금(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한국수산진흥공사의 자본금 5천억원을 전액 출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000억원(연평균 1,000억원)으로 추계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정부가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을 한국수산진흥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한국수산진흥공사 자본금 출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한국수산진흥공사 자본금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000

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정부가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을 한국수산진흥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